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4

2023. 6. 1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6. 1.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6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12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3. 6. 13.)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김영권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문성)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생활보장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1)]

○ 강남구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2)]에 근거하여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3)]가 맡도록 구성되어 있음.

○ 개정안은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현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아닌 복지생활국 사회보장과 소관 생활보장위원회가 맡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임.

---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③ (생략)
④ 시 · 군 · 구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법 제12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①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검토한다.
1. 사회보장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 · 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및 지역사회보장증진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 검토하건데 2023년 1월 1일字로 민선8기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조직 개편에 따라 복지생활국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6개 부서에서 7개 부서가 되었고, 부서 명칭을 ▲사회복지과→사회보장과 ▲여성가족과→가족정책과 ▲청소행정과→자원순환과로 변경하였음.

○ 집행부는 조직 개편의 취지와 당위성을 "기존 부서의 인력과 업무 일부 재배치를 통한 복지서비스별 기능 강화와 전문성 향상"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조직개편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각 부서간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야 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임.

○ 그러한 의미에서 (현)사회보장과 소관의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기능을 (현)복지정책과 소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게 대신하도록 하는 현행 구조는 위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한 금번 개정안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

발의연월일: 2023. 6. 1.

발 의 자: 김영권·강을석·복진경·이성수·김광심·이도희 의원 (이상6인)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서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관계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생활보장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생활보장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⑤ 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는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시·도 및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과 각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